

의성군의회 공고 제2021-32호

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2월 7일

의성군의회 의장



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(2022. 1. 13.시행)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「지방자치법」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조)

3. 의견 제출

○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2월 13일까지 의성군의회 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※ 의견제출 및 문의처 : 의성군 의성읍 후죽5길 24 【우편번호 : 37337】

의회사무과 (☎ 054-830-6391)

의성군 조례 제 호

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·제54조·제56조”로 “의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한다)”를 “의성군의회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의회”를 “의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로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53조(정례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

② 정례회의 집회일,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4조(임사회)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.

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④ 임사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6조(개회·휴회·폐회와 회의일수) ① 지방의회의 개회·휴회·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.

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사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